국제회계기준 실무서 1

'경영진설명서 작성을 위한 개념체계' 번역서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18. 11. 14.

이 '경영진설명서 작성을 위한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위원회 (KASB)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이 아닌,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가 발표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경영진설명서 작성을 위한 개념체계' (Management Commentary - A Framework for Presentation)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이 번역한 자료입니다. 일부 내용은 IASB가 발표한 영어원문과 달리 표현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실무서는 K-IFRS를 구성하지 않으며 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에 강제되지 않습니다. 이 실무서의 구체적인 성격과 위상은 IASB가 발표한 영어원문과 이 번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국제회계기준(IFRSs) 및 부속 출판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가 발표한 것입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5 IFRS Foundation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국제회계기준재단(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undation: IFRS Foundation) 및 이 출판물의 저작자와 출판자는, 이 출판물에 의거하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은 자의 부주의 등 여하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제회계기준(IAS) 및 해석서(Interpretations)를 포함하는 국제회계기준(IFRSs)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IFRSs)의 정본은 IASB가 발표한 영문판입니다. 사본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출판 및 저작권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모든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국제회계기준재단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이 없이, 이 출판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번역, 재인쇄, 재출간 또는 전자, 기계 또는 기타의 방법(복사와 리코딩을 포함한 정보저장과 검색의 방법으로서 알려진 것과 이후 개발될 것을 포함)에 의한 형태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재단의 동의 하에 국제회계기준과 이 출판물에 포함된 관련 문서들의 한국어 번역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에 대한 저작권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게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은 국제회계기준재단이나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3층, 04513, 전화: +82 (0)2 6050-0150, 팩스: +82 (0)2 6050-0170, 이메일: webmaster@kasb.or.kr, 홈페이지: www.kasb.or.kr

국제회계기준재단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의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사용과 관련하여, 한국어로 구성된 일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 또는 채택한 번호가 매겨진 모든 국제회계기준(IAS) 및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의 본문,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나 상설해석위원회(SIC)가 발표한 해석서의 본문(이하 '기준서 본문')으로 구성됩니다.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서 본문을 한국어로 재출간할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재단은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모든 권리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한국어로 구성된 기준서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COPYRIGHT NOTIC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together with their accompanying documents are issued by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5 IFRS Foundation

The IASB, the IFRS Foundation, the authors and the publishers do not accept responsibility for loss caused to any person who acts or refrains from acting in reliance on the material in this publication, whether such loss is caused by negligence or otherwise.

IFRSs (which includ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Interpretations) are copyrigh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Foundation. The authoritative text of IFRSs is that issued by the IASB in the English language. Copies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Please address publication and copyright matters to: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translated, reprinted or reproduced or utilised in any form either in whole or in part or by any electronic, mechanical or other means, now known or hereafter invented, including photocopying and recording, or in any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prior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related material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has been approved by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in Korea with the permission of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is the copyright of the IFRS Foundation. Copies of the Korean translation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or the KASB, KCCI Building 3rd Flr., 39 Sejong-daero, Jung-gu, Seoul, 04513, Korea.

Tel: +82 (0)2 6050 0150 Fax: +82 (0)2 6050 0170 Email: webmaster@kasb.or.kr

Web: www.kasb.or.kr

The IFRS Foundation has waived the right to assert its copyright in certain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such materials consist of all numbered, bar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in the form that they are issued or adopted by the IASB, or Interpretations issued by the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S IC) or Stand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S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sovereign consent and in connection with any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Reproduction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is permitted for any use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and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IFRS Foundation reserves all right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y use other than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목 차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1 '경영진설명서' 번역서

	문단번호
목적	1
적용범위	2-4
경영진설명서의 식별	5-7
경영진설명서의 이용자	8
경영진설명서 작성을 위한 개념체계	9-23
목적	9-11
원칙	12-21
표시	22-23
경영진설명서의 구성요소	24-40
사업의 성격	26
목표와 전략	27-28
자원, 위험 및 관계	29-33
결과와 전망	34-36
성과 측정치와 지표	37-40
시행일	41

부록: 정의된 용어들

결론도출근거 (BC1-BC53)

기타 참고사항: 이 실무서의 개요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1 경영진설명서

목적

이 실무서의 목적은 경영진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 제표와 관련된 유용한 *경영진설명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있다.

적용범위

- 2 이 실무서는 경영진설명서에만 적용하며, 재무제표나 더 광범위한 재무보고서에 제공되는 다른 정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이 실무서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와 관련된 경 영진설명서를 제공하는 기업이 적용하여야 한다.
- 4 이 실무서는 어떤 기업이 경영진설명서를 발표하여야 하는지, 어떤 빈도로 발표해야 하는지 또는 경영진설명서에 적용되어야할 확신의 수준은 규정하지 않는다.

경영진설명서의 식별

- 5 경영진설명서가 재무제표와 관련되어 있을 때, 기업은 재무제표를 경영진설명서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경영진설명 서와 관련된 재무제표를 경영진설명서에서 식별되도록 해야한다.
- 6 경영진은 경영진설명서에서 무엇을 제공하는지를 명확히 식별하고 그것을 다른 정보로부터 구분해야 한다.

7 경영진설명서를 작성할 때, 경영진은 이 실무서를 어느 정도까지 준수하였는지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이 실무서 전체를 준수한 경우에만 경영진설명서가 이 실무서를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경영진설명서의 이용자

8 경영진은 재무보고서의 주된 이용자의 필요를 고려하여 경영진설 명서에 포함할 정보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된 이용자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리고 그 밖의 채권자이다.

경영진설명서 작성을 위한 개념체계

목적

- 9 경영진설명서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관련 재무제표에 대한 맥락을 알려주는 통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정보는 유리한 상황 및 불리한 상황을 포함하여 무엇이 일어났는지 뿐만 아니라,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기업의 미래에 대한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경영자의 관점을 설명한다.
- 10 경영진설명서는 기업의 자원과 기업 및 기업자원에 대한 청구 그리고 그것들을 변화시키는 거래와 기타 사건에 대한 통합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재무제표를 보완하고 보충한다.
- 11 경영진설명서는 또한 기업의 미래 성과, 상태 및 *진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추세와 요인을 설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영 진설명서는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보여준다.

원칙

- 12 경영진은 다음의 원칙과 일관된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 (1) 기업의 성과, 상태 및 진척에 대한 경영진의 관점을 제공하며,
 - (2) 재무제표에 제공된 정보를 보충하고 보완한다.
- 13 그러한 원칙에 따라, 경영진설명서에 다음을 포함해야한다.
 - (1) 미래전망 정보, 그리고
 - (2)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설명된 질적 특성을 가진 정보
- 14 경영진설명서는 명시된 진척 전략과 계획에 관련된 기업의 성과 와 경영진의 활동을 재무보고서 이용자가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 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설명서의 형식은 재무보고서 이용자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1) 기업의 위험노출, 위험관리전략 그리고 그러한 전략의 효과성
 - (2)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는 자원이 어떻게 기업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 (3) 비재무적 요인이 재무제표에 표시된 정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경영진의 관점

75 경영진설명서는 기업의 성과, 상태 그리고 진척에 대한 경영진의 관점을 제공해야 한다. 경영진설명서는 사업 경영에 있어서 경영 진에게 중요한 정보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재무제표 정보의 보충과 보완

16 경영진설명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금액 그리고 그 정보를 형성 한 조건과 사건을 설명함으로써 재무제표를 보충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경영진설명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았으나 기업의 경영진에게 중요한 기업 및 기업의 성과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여야 한다.

미래전망 정보

- 7 경영진설명서는 기업의 방향에 대한 경영진의 관점을 전달해야 한다. 그러한 정보가 미래를 예측하지는 않으며, 그 대신 기업을 위한 경영진의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피력한다. 경영진설명서에 포함되는 미래전망의 범위는 기업이 영업하는 감독환경 및 법적환경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 7 경영진은 기업의 유동성, 자본, 수익 그리고 영업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세, 불확실성 또는 그 밖의 다른 요인을 알게 되었을 때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그러한 정보는 기업의 재무상태, 유동성 및 성과가 미래에 변할 수 있는 정도와 그 이유에 대해 중점을 두어야 하고, 당기 결과의 관점에서 기업의 전망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경영진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추정과 예측을 포함하여 서술적인 설명이나 계량적 자료를 통해, 미래전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경영진은 미래전망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 가정을 공시해야 한다.
- 79 경영진은 기업의 성과가 전기 경영진설명서의 미래전망 공시와 비교하여 어떻게 그리고 왜 미달, 달성 또는 초과되었는지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경영진이 과거 보고 기간에 미래 성과의 목표를 명시하였다면, 당기에 기업의 실제 성과를 보고하고 이전에 명시한 목표로부터의 유의적인 변동을 분석하고 설명해야하며 아울러 그러한 변동이 기업의 미래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기대에 주는 시사점도 분석하고 설명해야 한다.

유용한 정보의 질적특성

20 경영진설명서의 정보는 *목적적합성* 그리고 *충실한 표현*이라는 근본적인 질적특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경영진설명서의 정보는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및 *이해가능성*이라는 부가적인 질적특성도 최대화하여야 한다.

중요성

21 경영진은 경영진설명서에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중요성은 각 기업마다 다를 것이다. *중요성*은 '해당 기업에 특유 한 측면의 목적적합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기업에 목적적합 한 정보는 또한 중요할 것이다.

표시

- 22 경영진설명서는 명확하고 간략해야 한다. 경영진설명서의 형식과 내용은 기업의 사업 성격, 경영진이 채택한 전략 그리고 기업이 영업하는 감독환경을 반영함에 따라 기업마다 다를 것이다.
- 23 경영진설명서는 이 실무서에 설명된 원칙의 취지에 맞는 방식으로 가장 중요한 정보에 중점을 두어 작성되어야 한다. 특별히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1) 경영진설명서는 관련된 재무제표와 일관되어야 한다. 만약 재무제표가 부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경영진설명서에 제공된 정보는 그 세분화를 반영해야 한다.
 - (2) 실행가능하다면, 경영진은 재무제표 주석으로 표시한 것을 경영진설명서에 중복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재무제표 정보를 분석 없이 다시 인용하거나 기업의 과거 성과나 전망에 이해를 제공하지 않는 틀에 박힌 논의를 제공하는 것은, 재무보고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용자가 기업이 직면한 가장 유의적인 문제를 식별하고 이해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다.

(3) 경영진은 기업의 실무나 환경과 관련 없는 일반적 공시를 피해야 하며, 더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중요하지 않은 공시를 피해야 한다.

경영진설명서의 구성요소

- 24 비록 경영진설명서의 특별한 초점은 기업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경영진설명서는 다음 사항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 인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1) 사업의 성격
 - (2) 경영진의 목표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
 - (3) 기업에게 가장 유의적인 자원, 위험 및 관계
 - (4) 영업과 전망의 결과
 - (5) 명시된 목표와 비교하여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경영진 이 사용하는 중요한 성과 측정치와 지표
- 25 위의 요소들은 특정한 순서를 가지고 열거된 것이 아니다. 그러 나, 요소들은 관련되어 있으며, 외따로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 경 영진은 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해하며 경영진의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사 업에 대한 경영진의 관점과 요소간 상호작용에 대한 경영진의 분 석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의 성격

26 경영진은 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기업과 기업이 영업하는 외부환 경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업에 대한 설명을 제공 해야 한다. 그 정보는 기업의 성과, 전략적 선택 그리고 전망을 평가하고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 경영진설명서는 다음 유형의 정보에 대한 통합된 논의를 포함할 수있다.

- (1) 기업이 영업하는 산업
- (2) 기업의 주요 시장과 그 시장에서의 경쟁적 지위
- (3) 기업 그리고 기업이 영업하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규 제적 그리고 거시 경제학적 환경의 유의적인 특성
- (4) 기업의 주요 재화, 용역, 사업과정 그리고 유통방식
- (5) 기업의 구조 및 가치창출방법

목표와 전략

- 27 경영진은 재무보고서 이용자들이 활동의 우선순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결과를 내기 위해 관리해야 할 자원을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목표와 전략을 공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영진이 시장추세와 그 시장추세가 보여주는 위협과 기회를 어떻게 다룰 의도인지에 대한 정보는 재무보고서 이용자가 기업의미래 성과를 예상하는 데 통찰력을 준다. 또한 경영진은 성공을어떻게 측정될지 그리고 몇 기간에 걸쳐서 평가되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 28 경영진은 직전기간 또는 과거 여러 기간들과 비교하여 기업의 목 표와 전략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를 논의해야 한다. 목표, 전략, 경 영자의 활동과 업무집행이사 보상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도 도움 이 될 것이다.

자원, 위험 및 관계

29 경영진설명서는 경영진이 생각하기에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자원, 위험 및 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그 자원, 위험 및 관계를 관리하는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자위

30 경영진설명서는 기업이 사용가능한 중요한 재무적 및 비재무적 자원과 경영진이 명시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자원에 대한 공시는 기업의 성격과 기업이 영업하는 산업에 달려있다. 기업의 자본구조, 재무약정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든 그렇지 않든), 유동성과 현금흐름, 인적 및 지적 자원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과 함께 잉여자원에 또는 식별되고 예상되는 비적절성에 대처하는 계획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시의 사례들이다.

위험

- 31 경영진은 위험관리 전략의 유효성에 대한 공시뿐만 아니라 기업 의 주요 위험노출과 그 위험의 변화를 공시하되, 그러한 위험을 부담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계획과 전략도 함께 공시하여야 한 다. 이러한 공시는 이용자가 예상결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위험을 평가하도록 도움을 준다. 경영진은 모든 가능한 위험과 불확실성 을 나열하기 보다는 기업이 직면하는 주요 위험과 불확실성을 구 분하여야 한다.
- 32 경영진은 유의적으로 기업의 전략과 기업가치 진척에 영향을 주는 주요 전략, 상업적, 영업적 그리고 재무적 위험을 공시해야 한다. 기업이 직면하는 주요 위험에 대한 설명은 부정적인 결과와 잠재적 기회를 모두 다루어야 한다. 경영진설명서는 경영진의 기업 목표와 전략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주요 위험과 불확실성을

논의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 주요 위험과 불확실성은 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외부 또는 내부 위험을 구성할 수 있다.

관계

33 경영진은 기업이 갖는 이해관계자와의 유의적인 관계, 그러한 관계가 어떻게 기업의 성과나 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관계가 관리되는지를 식별하여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공시는 기업의 관계가 사업의 성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기업의 관계가 사업을 실질적인 위험에 노출시키는지 여부를 재무보고서 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결과와 전망

34 경영진설명서는 기업의 재무적 및 비재무적 성과, 그 성과가 미래 성과를 어느 정도 시사하는지, 그리고 기업의 전망에 대한 경영진 평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한 문제에 대한 유용한 공시는 기업의 성과, 상태, 진척 그리고 전망에 대하여 이 용자들 자신이 평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결과

35 경영진설명서는 그 기간 동안 기업의 성과와 진척 그리고 그 기간말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한 설명은 재무보고서 이용자에게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추세와 요인에 대한통찰력을 제공한다. 그러한 설명을 제공함에 있어, 경영진은 기업의 결과, 경영진의 목표 및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진의 전략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경영진은 직전 기간 또는 그 이전 여러 기간들과 비교하여 재무 상태, 유동성 및성과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에 대한 논의와 분석을 제공해야 하며,

이것은 과거 성과가 미래성과를 어느 정도 시사하는 지를 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망

36 경영진은 기업의 전망에 대한 분석을 제공해야 하며, 이에는 재무적 그리고 비재무적 측정치에 대한 목표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정보는 경영진이 장기간에 걸쳐 기업 전략을 어떻게 실행할 의도가 있는지를 재무보고서 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목표가 계량화 될 때, 경영진은 이용자가 그러한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위험과 가정을 설명해야 한다.

성과 측정치와 지표

37 성과 측정치는 기업의 중요한 성공요인을 반영한 계량화된 측정 치이다. 지표는 어떻게 사업이 관리되는지를 설명하는 서술적인 근거이거나 성과의 간접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계량화된 측정치일 수 있다. 경영진은 명시된 목표에 대한 진척을 평가하기 위해 경영진이 사용한 성과 측정치와 지표(재무적 및 비재무적 모두)를 공시해야 한다. 경영진은 성과 측정치가 당해 기간에 걸쳐 왜 변동하였는지 또는 어떻게 지표가 변동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공시는 재무보고서 이용자가 목적들과 목표들이 달성되는 정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8 기업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성과 측정치와 지표는 경영진이 그 기업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성과 측정치와 지표이다. 그성과 측정치와 지표는 보통 기업이 영업하는 산업을 반영한다. 성과 측정치와 지표가 그 산업에서 또는 더 일반적으로 폭 넓게 받아들여지고 사용된다면 비교가능성이 향상된다. 경영진은 사용된성과 측정치와 지표가 왜 목적적합한지를 설명해야 한다.

39 성과 측정치와 지표에 대한 일관성 있는 보고는 여러 기간에 걸 친 경영진설명서의 비교가능성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경영진은 전 기에 사용된 성과 측정치와 지표가 계속적으로 목적적합한지 여 부를 고려해야 한다. 전략과 목표가 변경됨에 따라, 경영진은 전 기의 경영진설명서에 제공된 성과 측정치와 지표가 더 이상 목적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 경영진이 사용된 성과 측정치 와 지표를 변경시키는 경우 그러한 변화는 식별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10 만약 재무제표의 정보가 경영진설명서에 포함되기 위해 수정된다면,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만약 국제회계기준에 의해 요구되거나 정의되지 않은 재무성과 측정치가 경영진설명서에 포함된다면, 그러한 측정치는 정의되고 설명되어야 하며 그 측정치의 이용자에 대한 목적적합성의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무성과 측정치가 재무제표로부터 파생되거나 도출되었다면, 그러한 측정치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서 제공된 측정치와 차이조정이 되어야 한다.

시행일

41 기업은 2010년 12월 8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작 성되는 경영진설명서에 이 실무서를 전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부록

정의된 용어들

이 부록은 이 실무서의 일부이다.

미래전망 정보	미래에 대한 정보. 나중에 과거 정보(즉 결과)로
	제공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정보(예: 전망과 계
	획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는 주관적이고,
	그 작성에는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하다.
경영진설명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관한 서
	술식 보고서. 경영진설명서는 이용자에게 재무제
	표에 표시된 금액, 특히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
	과 및 현금흐름에 대한 역사적 설명을 제공한다.
	경영진설명서는 재무제표에 제공되지 않은 기업
	의 전망과 기타 정보에 대한 설명도 제공한다. 또
	한 경영진설명서는 경영진의 목표와 그 목표달성
	전략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진척	당기에 기업이 어떻게 성장 또는 변하였는지와
	함께 미래에 기업이 어떻게 성장 또는 변할 것인
	지를 반영

다음 용어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규정된 의미와 같이 이 실무서에서 사용된다.

- (1) 비교가능성
- (2) 충실한 표현
- (3) 중요성
- (4) 목적적합성
- (5) 적시성
- (6) 이해가능성
- (7) 검증가능성

결론도출근거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이 실무서에 첨부되지만, 이 실무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개요

- BC1 이 결론도출근거는 IFRS 실무서 '경영진설명서'를 마련하면서 IASB가 고려한 사항을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있게 고려하였다.
- BC2 이 실무서는 '경영진설명서' 토론서와 '경영진설명서' 공개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조회에 대한 의견을 고려한 후에, 구속력이 없는 지침으로서 제정하도록 IASB에 의해 승인되었다.
- BC3 재무제표의 목적은 경제적 의사결정시 광범위한 이용자들에게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IAS 1 '제무제표 표시'문단 9). 그러한 목적에 따라작성된 재무제표는 이용자 대부분의 공통적인 필요를 충족시킨다. 그러나 재무제표는 주로 과거 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표현하지만성과의 비재무적 측정치나 미래 전망이나 계획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 BC4 경영진설명서는 재무제표를 보충하고 보완한다. 이 실무서를 제정하는 IASB의 목적은 기업의 경영진설명서에 제공된 정보의 유용성을 개선하여, 경영진설명서가 재무제표와 함께 제공되었을 때이용자들이 기업에 대한 자원제공 의사결정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BC5 정부, 증권 감독기구, 증권거래소 그리고 전문 회계관련기구는 종종 채무증권 또는 지분증권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업에게 경영진설명서의 제출을 요구한다. 경영진설명서는 각 국가에서 경영진 논의와 분석(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MD&A), 영업과 재무검토(operating and financial review, OFR), 사업검토서 또는 경영진 보고서라고 말하는 보고들을 아우르는 것이다.
- BC6 이 결론도출근거는 다음의 문제를 논의한다.
 - (1) 배경 (문단 BC7~BC11)
 - (2) 목적 (문단 BC12~BC14)
 - (3) 적용범위 (문단 BC15~BC17)
 - (4) 경영진설명서의 식별(문단 BC18~BC21)
 - (5) 경영진설명서의 이용자(문단 BC22~BC25)
 - (6) 경영진설명서의 목적(문단 BC26~BC28)
 - (7) 경영진설명서의 표시를 위한 원칙(문단 BC29~BC44)
 - (8) 표시(문단 BC45와 BC46)
 - (9) 경영진설명서의 구성요소(문단 BC47~BC49)
 - (10) 재무보고에서 공시의 위치(문단BC50~BC53)

배경

- BC7 지난 2002년 IASB는 독일, 뉴질랜드, 영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의 대표자 그리고 캐나다의 공인회계사협회(the Canadian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의 대표자로 이루어진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였다. 이 프로젝트 팀은 경영진설명서에 대한 기준 또는 지침의 제정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005년 10월 IASB는 프로젝트팀의 연구결과를 경영진설명서 토론서로서 발표하였다.
- BC8 이 토론서에서 프로젝트팀은 경영진설명서의 이용자, 목표 및 질 적 특성에 대한 관점을 피력하였다. 또한, 프로젝트팀은 경영진설

명서의 필수요소(토론서에서는 '내용 요소'라고 언급)를 설명하고, 경영진설명서에 나타나는 정보와 재무제표의 주석에 나타나는 정 보를 구분할 때 기준제정기구가 이용할 수 있는 개념체계를 설명 하였다.

BC9 2009년, IASB는 경영진설명서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그 공개초안에서는 토론서에 포함된 제안내용과 그 제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였다. 또한 공개초안은 다양한 국가의 감독수준에서이루어지는 서술식 보고의 발전내용을 반영하였고, '재무보고를위한 개념체계'에 대한 IASB의 최근 작업내용을 반영하였는데, 특히 공개초안 '제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개선 : 제1장 제무보고의목적, 제2장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보고 정보의 질적특성과 제약조건(2008년 5월)'에 대한 최근 작업내용이 반영되었다. 중요한 점으로서 공개초안 '경영진설명서'는 공개초안의 제안내용을 IFRS가아니라, 구속력 없는 지침으로서 발표할 것이라는 제안을 담고 있었다.

BC10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지침으로 제정할 것이라는 IASB 공개초 안의 제안을 지지하였다. 이 실무서를 제정함에 있어, IASB는 이러한 제안에 대한 외부의견을 고려하였고, 경영진설명서의 정보에 질적특성을 적용하는 것, 실무서에 적용지침과 사례를 포함시키는 것 그리고 예측이 미래전망 정보로서 경영진설명서에 포함되어야하는지와 같은 기타 논제에 대한 외부의견을 고려하였다.

BC11 IASB는 경영진설명서가 'IFRS 전문' 문단 7에 설명되어 있는 '기 타 재무보고'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경영진 설명서가 재무보고에 해당하며, *개념체계*의 적용범위 안에 있다고 결정하였다1). 결과적으로 경영진설명서도 IASB의 범위와 권한에 속한다.

목적

- BC12 이 실무서는 경영진설명서의 표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구속력 없는 개념체계를 정한다. 이 실무서를 제정하는 IASB의 의도는 경영진설명서를 기업의 특정상황에 맞게 작성하도록 경영 진의 재량행사를 허용함으로써 경영진설명서 보고에 좋은 실무가 확립되도록 하는 것이다.
- BC13 이 실무서가 IFRS가 아니고 구속력도 없지만, IASB는 이 실무서가 IFRS 재무제표에 첨부되는 경영진설명서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간에 비교가능성을 증대시켜 이용자에 대한 재무보고 유용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믿는다.
- BC14 IASB는 구속력 없는 실무서가 재무보고를 개선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IASB는 실무서가 기업들에게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고, 그 유연한 적용은 각기 고유한 요구사항과 규정을 갖고 있는 국가들에 소재하는 기업에 효익을 줄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또 IASB는 실무서가 경영진설명서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으로 하여금 이용자를 위해 경영진설명서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실무서가 있으면, 각 국가가 자국의 것으로 채택하도록 권장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적용범위

BC15 IASB는 이 실무서가 경영진설명서를 작성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기업에게 유용함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무서가 기업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주식거래소에 의해 부과된 각 요구사항이

¹⁾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하는 '개념체계'는 2010년에 공표되어 이 실무서가 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나 규정과 상충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요구사항과 규정에 의해 경영진이 설명서를 작성하는 데 이미 익숙한 기업에게도 유용할 수 있다. 따라서, IASB는 이 실무서가 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 표와 관련된 경영진설명서를 작성하는 기업들에 의해 적용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 BC16 IASB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판단이 각 국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IFRS가 아니라 구속력 없는 실무서 형태로 경영진설명서의 내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 (1) 기업이 IFRS 재무제표에 추가하여 경영진설명서를 포함하도록 요구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IFRS 준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설명서의 포함이 필요한지 여부
 - (2) 경영진설명서에 적용되어야 하는 확신의 수준
 - (3) 미래전망 정보 포함과 관련된 '면책조항(safe harbour)2)' 규정 의 필요성
 - (4) 경영진설명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의 유형
- BC17 IFRS가 아닌 실무서로 공표하기로 한 IASB의 결정은 특별히 각 국가에서 요구하지 않는다면 IFRS를 적용하는 기업에게 이 실무서를 준수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이 실무서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IFRS에 따라 기업의 재무제표가 작성될 수 있다. 또한 특정 회계연도에 경영진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기업의 재무제표는 IFRS를 준수할 수 있다.

경영진설명서의 식별

BC18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설명서의 위상은 경영진설명서를 요구하는 국가마다 다르다. 어떤 국가에서는 경영진설명서가 주주에게

²⁾ 면책조항(safe harbour)이란 당사자가 선의로 활동을 수행하였을 경우 법에 의해 그 당사자의 의무를 경감 또는 면제하는 법령조항이나 규정

보고되는 연차재무제표에 첨부된다. 다른 국가에서는 경영진설명서가 별도의 연차 감독신고서에 포함된다.

- BC19 IASB는 재무제표 주석 안에 본문자료와 그 밖의 정보를 추가하는 방안으로 재무제표에 경영진설명서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지고려하였다. IASB는 경영진설명서가 재무제표를 보충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 방안을 기각하였다. 결국, IASB는 경영진설명서를 재무제표 안에 두지 말아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 BC20 문단 BC33에 언급된 것과 같이 경영진설명서는 관련된 재무제표에 제공된 정보를 보충하고 보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IASB는 경영진설명서를 재무제표와 연계하기로 하였다. IASB는 (최소한)관련된 재무제표를 식별하지 않고 경영진설명서를 제공하는 것은이용자에게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결과적으로IASB는 기업이 IFRS 재무제표에 관련된 경영진설명서를 작성할때, 재무제표를 경영진설명서와 함께 이용가능하게 하거나 경영진설명서가 관련된 재무제표를 식별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이 실무서가 기업에게 경영진설명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지않기 때문에, IFRS 재무제표는 상응하는 경영진설명서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 BC21 IASB의 관점에서 볼 때 재무보고이용자가 이 실무서를 사용한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IFRS에 따라 작성된 정보와 구분할 수 있고, 이용자에게 유용할 수 있으나 이 실무서의 대상이 아니거나 IFRS의 요구사항이 아닌 정보와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IASB는 이 실무서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작성자들이 이 실무서를 준수하였다는 공식적인 확인을 포함하도록 요구받지 않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반면, 만약 작성자들이 이 실무서를 준수한 범위에 대한 설명을 경영진설명서에 포함한다면 도움이될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였다. 또한 IASB는 만약 작성자들이

이 실무서의 전부를 준수한 것은 아닌데도 이 실무서를 준수했다고 주장한다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경영진설명서의 이용자

- BC22 2010년 9월 IASB는 개념체계 두 개의 장(제1장 :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목적, 제3장 :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을 발표하였다. IASB의 관점에서 볼 때 경영진설명서는 개념체계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 이 실무서가 개념체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두가지측면은 이용자의 정의와 경영진설명서의 질적특성(문단BC41~BC43 참조)이다.
- BC23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경영진설명서의 요구사항 또는 지침에서 정보는 투자자 또는 기존 주주와 같은 더 한정된 집단의 필요를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경영진설명서가 어떤 이용자에게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어 왔으며, 많은 관계자들이 경영진설명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필요를 충족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 BC24 IASB는 경영진설명서가 재무보고의 일부를 구성하고 '개념체계'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영진설명서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는 일반목적 재무보고가 초점을 두는 이용자와 동일한 이용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BC25 따라서, IASB는 경영진설명서의 주된 이용자는 '개념체계' 제1장 문단 OB2에서 식별된 자들, 즉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그 밖의 채권자'라고 결론내렸다.

경영진설명서의 목적

- BC26 IASB는 경영진설명서의 목적은 경영진의 관점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맥락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이는 많은 국가의 규정과 지침에서 명시된 목적과 일관성이 있다. 예를 들어, 2003년 12월 미국 SEC에 의해 공표된 지침에서는 경영진 논의와 분석 (MD&A)의 목적이 '복잡하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그 목적은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상태의 변동 그리고 영업의 결과를 이해하는데 필요한'(SEC, Regulation S-K, Item 303)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데 있다.
- BC27 경영진설명서의 내용은 관련된 재무제표에 명시된 보고기간에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 경영진설명서의 어떤 정보는 미래에 대한 것이다. IASB는 경영진설명서에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는 것은 과거 성과가 미래 성과를 시사하는지 여부와 기업의 진척이 경영진이 명시한 목표와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무보고 이용자들이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결론내렸다.
- BC28 IASB는 부록에 있는 '진척(progress)'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회사의 사업과 상태의 경과(development)에 대한 최소한의 적절한 검토'(특정 유형기업의 연차 결산보고서의 4차 의회 지시사항제46조, Article 46 of the Fourth Council Directive on the annual accounts of certain types of companies(78/660/EEC))에 대한 EU의 규정에서 사용된 '경과(development)' 용어의 용례에근거를 두었다. 'development'라는 용어는 이미 IFRS에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무서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경영진설명서의 표시를 위한 원칙

경영진의 관점

BC29 문단 12(1)의 원칙에서 '경영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주요 경영진'이라는 용어는 IAS 24 '특수관계자 공사'에서 '직·간접적으로 당해 기업 활동의 계획·지휘·통제에 대한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모든 이사(업무집행이사 여부를 불문함)를 포함함'(IAS 24 문단 9)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BC30 IASB는 누가 경영진설명서를 작성하고 승인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주요 경영진'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고, 각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영국은 회사법 2006에서 이사진 보고서의 일부로 사업검토서를 요구하고 있다.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그러한 규정이 영국 회계기준위원회(Accounting Standards Board, ASB)의 OFR 보고서에 반영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OFR이 이사진에 의한 분석이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더욱이 그 사업검토서 또는 OFR의 승인에 대한 책임자는 이사진이다. 캐나다, 프랑스 및 독일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다. 따라서 IASB는 각 국가의 규정을 고려해 볼 때 '경영진'이라고 언급한다면 기업이 문단 12(1)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BC31 IASB는 경영진설명서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관점을 설명해야 한다는 원칙은 감독에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예를 들어, SEC의 목적 중 첫번째는 MD&A에 대해 다음을 요구하고 있다.

... 투자자들이 경영자의 시각을 통해 기업을 볼 수 있도록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서술식 설명을 제공[SEC Regulation S-K, Item 303]

그러한 요구사항은 캐나다의 증권규정과 영국 ASB의 OFR 보고서 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BC32 IASB는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경영진에게 중요한 정보는 거의 예외 없이 성과와 전망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본제공자에게 중요한 정보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제시한 연구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경영진설명서가 경영진에게 중요한 정보와 동일한 정보로 부터 도출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재무제표의 보충 및 보완

BC33 문단 BC11에서는 경영진설명서가 전문(Preface)에 나오는 '기타 재무보고'의 정의를 충족한다는 것을 IASB가 알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IASB는 재무제표를 보충하고 보완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원칙이 '전문' 문단 7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음에 주목하였다.

기타 재무보고는 재무제표 외부에서 제공되며 전체 재무제표 의 해석을 돕고 이용자의 효율적인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BC34 재무제표를 보충하고 보완하는 원칙을 위한 맥락을 제공하는 것은 과소적립된 확정급여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서를 예로 들 수있다. 이 예에서 경영진은 과소적립액의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과소적립을 초래한 조건과 사건(예: 사외적립자산의 저조한 수익 또는 제도에 의해 혜택받는 자들의 인구통계)에 대해서 서술식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재무제표의 공시를 보완하고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경영진은 재무제표에는 공시되지 않으나 제도의 관리(예: 투자관리자의 교체 또는 특정 투자기회에 대한 집중)에 중요한 제도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전망 정보

BC35 IASB는 많은 국가의 경영진설명서 관련규정이 재무보고서 이용자가 기업의 전망을 평가하는 데 도움되는 정보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규정은 감독규정, 특히 SEC의 MD&A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SEC의 규정 중 MD&A 보고를 위한 세번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기업의 이익 및 현금흐름의 질에 대한 정보와 잠재적 변동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로써 과거 성과가 미래의성과를 어느 정도 시사해주는지를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다.[SEC, Regulation S-K, Item 303]

- BC36 투자자가 전망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미국 감독규정은 캐나다 증권 규정과 European Modernisation Directive에서 모두 발견된다. 이 Directive는 그 후 EU의 회원국가에서 입법화되었다.
- BC37 IASB는 SEC의 MD&A 규정에서 명시된 이유에 따라 미래전망 정보를 경영진설명서에 포함하는 데 동의하였다.
- BC38 공개초안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미래전망 정보에 중점을 두는 데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IASB는 미래전망 정보가 중요하다고 결정하였다. 과거사건의 설명에 추가하여 기업의 동향, 목표 및 전망에 대한 경영진의 관점에 대해 설명한다면 재무보고서 이용자가 과거 성과와 현 상태로부터 기업에 대한 예상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더욱이 IASB는 이 실무서가 경영진설명서에 미래전망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포함할지를 결정할때 경영진에게 융통성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IASB는 미래전망 정보의 포함정도가 기업이 영업을 하고 있는 감독 환경과 법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 실무서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고 보았다. 게다가, 비록 미래전망 정보의 공시는 많은 국가에서 권장되고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예측 또는 추정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IASB는 어떤 국가에서는 미래전망 정보에 대해 법적책임 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면책(safe harbour) 조항이나 규제조항 또는 둘 모두가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면책 조항은 경고문이 미래전망 정보와 함께 포함될 것을 요구한다.

- BC39 IASB는 미래전망 정보가 기업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견해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미래전망 정보가 충실한 표현을 포함한 질적 특성을 가져야 하며, 따라서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게다가, 경영진은 미래전망 정보를 제공할 때 사용한 가정을 공시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이용자가 그러한 가정의 합리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
- BC40 IASB가 예측과 추정이 포함되지 않은 미래전망 정보로 생각하는 예는 문단 BC34에 설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과소적립된 확정급여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서이다. 그러한 예에서, 경영진은 과소적립 액에 대한 해결을 위한 경영진의 목표와 전략을 설명함으로써 미래전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에는 기여금액의 미래증가계획, 투자전략의 변경 또는 제도의 변경을 포함할 수 있다. 경영진은 일반 시장 추세나 그 밖의 위험이 과소적립 및 과소적립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진의 전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공시에는 계량적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나 반드시 예측과 추정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BC41 공개초안을 마련하면서, IASB는 상세한 적용지침이나 적용사례가 이 실무서에 포함된 미래전망 정보에 대한 지침의 적용에 필요하다는 견해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적용지침 또는 적용사례

를 과도하게 중시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IASB는 그러한 상세한 지침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더욱이 IASB는 그런지침이나 사례는 잘못 해석되어 이 개념체계를 적용하는 데 융통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공개초안에 대한 많은의견제출자들은 상세한 적용지침이나 적용사례를 포함하지 않도록 한 IASB의 결정을 지지하였다.

질적특성

- BC42 IASB가 경영진설명서는 *개념체계*의 적용범위 안에 있다고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이 실무서에서는 적절한 질적특성이 *개념체계*의 제3 장에서 식별된 것들이라고 규정한다(문단 BC22 참조). 그러므로 제3장의 질적특성은 재무제표와 경영진설명서에 모두 적용된다.
- BC43 경영진설명서에 질적특성의 적용을 논의함에 있어, IASB는 특히 균형개념(예: 불리한 뉴스와 유리한 뉴스를 모두 포함)이 일반적으로 질적특성과 어떻게 관련되고, 특히 검증가능성이라고 하는 질적특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 고려하였다. IASB는 개념 체계 제3장에 설명된 맥락에 의해 균형은 중립성과 동일하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중립성이 충실한 표현의 한 특성이므로 균형은 충실한 표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 BC44 또한 IASB는 미래정보를 포함한 경영진설명서의 정보는 제3장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검증가능성이라는 질적특성을 가질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제3장 문단 QC26에서는 '검증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다른 관찰자와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제공된 정보는 관찰 또는 실험에 의해 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IASB는 미래전망 정보에 대해 검증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합리성(재무보고서의 전망정보를 뒷받침하는 가정이 타당한가)의 측면일 것이라고 보았다.

표시

BC45 IASB는 경영진설명서의 내용과 그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예: 형식) 모두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경영진의 책임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IASB는 경영진설명서의 내용과 형식 모두에 대해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은 경영진이 경영진설명서를 작성할때 표준문안 접근법을 채택하게 될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보았다.

BC46 경영진설명서는 재무제표를 보충하고 보완하기 때문에, IASB는 경영진설명서가 재무제표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특히, 부문정보의 표시에서 그러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만약 재무제표가 부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경영진설명서에 제공된 정보는 그러한 세분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다. IASB는 이 정보가 기업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다고 보았다.

경영진설명서의 요소

BC47 IASB는 경영진설명서의 공시를 규정하는 것은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되는 정보를 규정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데 주목하였다. 어떤 기업에게 중대한 활동의 유형은 그 기업에게 특정된다. 따라서 감독기구들은 요소자체를 정의하기보다 그들이 경영진설명서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내용의 유형을 반영하는 요소를 찾는 경향이 있다. 기업은 그들의 각 상황에 가장 목적적합한문제들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IASB는 그와 유사한 접근법을따른다면 보다 의미있는 공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일부 IASB 위원들은 요소와 개념체계가 있으면 상세한 항목들에 대한 논의가 야기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항목들(예 : 중대한 회계추정치)의 상세목록을 이 실무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행점검표 (checklist-compliance mentality)와 같은 사고방식을 지양하고자하는데, 상세목록을 규정한다면 그러한 사고방식을 낳을 수 있다.

이용자의 필요

BC48 IASB는 경영진설명서의 주된 이용자로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의 필요를 근거로 이 실무서의 문단 24-40 에 설명된 다섯 가지 구성요소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아래 표는 이러한 다섯 가지 구성요소를 경영진설명서의 주된 이용자의 필요에 대한 IASB 평가와 관련지어본 표이다.

구성요소	이용자의 필요
사업의 성격	기업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식과 기업이 영업하는 외부환경
목표와 전략	기업에 의해 채택된 전략과 그러한 전략들이 경영 진의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성공적일 것인 지의 가능성을 평가
자원, 위험 및 관계	기업이 자원을 타인에게 이전해야 하는 의무 뿐만 아니라 기업이 사용가능한 자원을 결정한 근거, 장 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의 순유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장단기적으로 그러한 자원창출 활동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
결과와 전망	기업이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는지 여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의 시장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기업의 전략을 얼마나 잘 수행하였는지 및 기업의 자원, 위험 및 관계를 얼마나 잘 관리하였는지에 대해 간접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구성요소	이용자의 필요
성과 측정치 와 지표	명시된 목표와 전략에 대한 기업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경영진이 사용하는 중대한 성과 측정 치와 지표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BC49 IASB는 경영진설명서의 정보가 이 실무서 문단 8에 설명된 주된 이용자가 아닌 이용자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더 넓은 이용자 집단에게 목적적합한 논제가 기업의 성과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러한 논제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경영진이 고려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경영진설명서는 더 넓은 이해관계자 집단에서 다루어지는 다른 보고 형식의 대체물이 아니라고 보았다.

재무보고서에서 공시의 위치

- BC50 IASB는 공시 요구사항을 정하는 데 있어서 IFRS나 개념체계 어디에서도 IASB의 접근법을 위해 지침이 될 수 있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정보가 재무제표 주석에 속해야 하는지 경영진설명서에 속해야 하는 지가 항상 명확하지는 않다.
- BC51 2007년 12월에 IASB는 공시를 위한 개념체계 업무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고, 대신 개념체계 과제 E단계인 '재무보고의 경계, 표시 및 공시(Boundaries of financial reporting, and presentation and disclosure)'를 기다리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E단계가 공시원칙

마련을 포함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결국, IASB는 개념체계 E단계가 재무보고에 있어서 공시를 어디에 배치시킬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한 과제라고 보았다.

- BC52 IASB는 E단계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되는 정보의 유형과 경영진설명서에 공시되는 정보의 유형 간에 중복이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이러한 중복의 관점에서 볼 때, IASB는 배치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공시 수단으로서 경영진설명서를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정하였다.
- BC53 IASB는 일부 기업들이 이미 경영진설명서를 작성하고 있고, 한영역, 즉, IFRS 7 '금융상품' 공시'에 의해 요구된 위험 공시의 영역에서 이러한 중복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IFRS 7에서는 만약 경영진설명서의 공시사항이 재무제표에서 상호 참조표시되고, 경영진설명서가 재무제표와 같은 시기에 동일한 용어로써제공된다면, 경영진이 요구된 위험공시를 재무제표나 경영진설명서의 어디에서든지 제공해도 되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IFRS 7과 실무서는 이러한 공시를 어디에 할 것인지와 관련된 감사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기타 참고사항

이 실무서의 개요

번역 경과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개발한 실무서를 다음과 같이 번역하여 제공하였다.

번역일자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011. 12. 9.	경영진설명서 작성을 위한	Management Commentary(A
	개념체계	framework for presentation)

이 실무서는 다른 기준서의 제정 ·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수정일자	타기준서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18.11.14. 수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Amendments to the References
	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to Conceptual Framework in
	대한 개정'	IFRS

실무서의 목적

- IN1 이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경영진설명서*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와 관련한 경영진설명서의 작성을 위해 광범위하지만 구속력은 없는 개념체계를 제공한다.
- IN2 이 실무서는 국제회계기준은 아니다. 따라서, 만약 해당 국가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에 게 이 실무서의 준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또 이 실무서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기업의 재무제표가 작성될 수 있다.

경영진설명서란 무엇인가?

IN3 경영진설명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그리고 현금흐름을 해석하는 맥락을 제공하는 서술적 보고서이다. 또한 경영진설명서는 경영진에게 목표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설명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용자들은 기업의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경영진의 전략이 성공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망과 전반적 위험의 평가에 도움받기 위하여 경영진설명서에 제공된 정보를 통상적으로 이용한다. 많은 기업들에게 경영진설명서는 이미 재무제표를 보충 또는 보완하고, 자본시장과 의사소통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실무서를 적용하는 방법

IN4 이 실무서는 경영진설명서가 국제재무보고기준 전문(Preface 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문단 7³)의 기타 재무보고의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에 재무보고에 해당한다는 데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그러므로 경영진설명서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실무서는 그 개념체계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³⁾ 문단 7: The IASB achieves its objectives primarily by developing and publishing IFRSs and promoting the use of those standards in general purpose financial statements and other financial reporting. Other financial reporting comprises information provided outside financial statements that assists in the interpretation of a complete set of financial statements or improves users' ability to make efficient economic decisions....(IASB는 주로 IFRS를 개발하고 발표하며 일반 목적 재무제표 및 기타 재무보고 기준의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한다. 기타 재무보고는 재무제표 외부에서 제공되며 전체 재무제표의 해석을 돕고 이용자의 효율적인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생략))

IN5 이 실무서는 재무보고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원칙, 질적특성 그리고 경영진설명서의 구성요소를 명시한다. 그러나 경영진설명서의 형식과 내용은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 실무서는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각 국가의 법적, 경제적 환경을 포함한 사업의 특별한 상황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원칙도 제공한다. 이러한 유연한 접근법은 기업들이 자기의 개별상황에 가장 관련성있는 문제를 논하는 경영진설명서를 작성하도록 권장함으로써 보다 의미있는 공시를 하도록 만들것이다.

IN6 이 실무서에서 '경영진'은 기업의 의사결정 및 감독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경영진은 업무집행이사, 주요 경영진 그리고 지배기구의 구성원을 포함한다.4)

⁴⁾ 추가정보를 위해 문단 BC31과 BC32를 참조